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9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”을 “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 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 43조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<p>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.</p>